

2018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록 대상 추천 방안

'18.1.22.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1.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록 대상 조달청 선정 기준

- ◇ 창업·벤처기업의 신기술 및 융·복합기술 관련 물품 및 서비스를 벤처나라 등록 대상으로 하며,
- ◇ 신청 업체는 추천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조달청에 직접 온라인 신청 → 조달청 기술·품질평가 및 적합성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벤처나라 지정 대상

- (지정 자격)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휴·폐업, 부도, 파산, 부정당 업자제재 중에 있지 않고, 물품의 경우 소비재 완성품을 생산하는 업체
 -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
- (지정 품목)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신기술 및 융·복합기술 관련 물품 및 서비스*
 - * 단,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농·수산물은 제외
- (제외 대상) 「벤처나라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이하 '벤처나라 관련규정')」 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관련 규정 제6조 참고)

-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추천기관에서 제외대상 검증이 어려우므로 이는 조달청에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 실시)

2. 추천기관의 추천 절차

- ◆ ('18.01.22.) 2018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방안 및 모집공고 확인
- ◆ ('18.01.22.~02.23.)
 - ① 추천기관별 자체 추천기준을 수립하여 추천방식 결정
 - ② 조달청에서 제안하는 기본 평가 항목(참고1)을 참고하여 기술·품질평가를 실시하되, 자체 평가 불가능할 경우 조달청에 평가 요청
 - ③ 기술·품질평가 면제(관련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없이 바로 추천
- ◆ ('18.02.23.) 공문의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서' 엑셀파일을 조달청으로 회신 ('18년 1분기부터 업체에게 제공하는 추천서 발급 없이 엑셀파일만 조달청으로 제출)
- ◆ ('18.02.19.~03.05.) 추천받은 업체는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실시(필수)

① '18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방안 및 모집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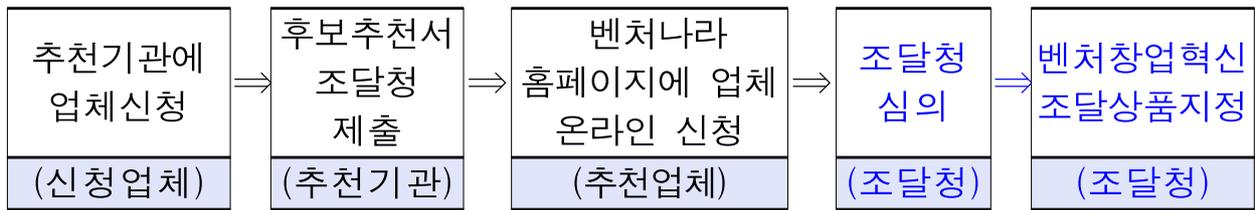
② 추천기관별 자체 추천기준을 수립하여 후보상품 추천

- (기본 원칙) 조달청에서 제안하는 기본 평가 항목(참고1)을 반영하여 추천기관이 기술성 및 품질·성능을 종합 심사 후 최종 추천
 - 추천기관 자체진행 또는 지역 유관기관(벤처기업협회 지사, 경제진흥원 등)과 협조*하여 기술·품질평가를 실시하되,
 - * (예시) A북도 시군구 공문발송 후 지역모집(조달청에 기술·품질평가 요청), B광역시 벤처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 추천, C시 자체사업인 '대표창업기업'에 선정된 업체 및 상품 추천(기술·품질평가 자체 검증 완료) 등
 - 추천기관 여건 등 자체적인 기술·품질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조달청에 기술·품질평가 요청 후 추천 가능
- (평가 면제) '벤처나라 관련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참고2)에서 기술 및 품질평가를 동시에 면제하는 경우 평가 면제대상으로 바로 추천
 - 단, 기술평가 면제대상(제9조)인 경우 품질평가를, 품질평가 면제대상(제10조)인 경우 기술평가를 실시하거나 조달청에 평가요청 후 추천

③ '참고3.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서' 엑셀파일을 조달청에 제출

④ 추천받은 업체에게 벤처나라 온라인신청 안내(※ 업체 직접 신청 필수)

3. 우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심사 절차



- (온라인 신청) ('18.02.19.~03.05.) 신청업체는 신청 서류를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사전 검토) ('18.03.06.~03.09.) 벤처나라 담당팀이 온라인 신청기업·제품에 대해 벤처나라 지정 자격, 품목,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판정*
 - * 추천기관에서 등록 신청 자격, 신청 품목을 1차 확인 하여 추천하면, 조달청은 해당 사항을 2차 확인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기술·품질 평가) ('18.03.06.~03.09.) 기술 및 품질평가가 필요한 후보 상품*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통하여 평가 실시
 - * 관련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기술·품질평가 면제대상이 아니거나 추천기관이 자체적인 평가가 불가능하여 조달청에 평가를 요청한 경우
- (적합성 평가) ('18.03.12.~03.15.) 추천기관 추천 내용과 구매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사전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최종 지정) ('18.03.16.) 심사 결과 적격인 상품을 벤처창업혁신조달 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결과 발표(벤처나라 공지사항)
 - 단,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
- (상품 등록) ('18.03.16.~3년간 등록 가능) 지정된 업체는 추후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물품목록번호, 벤처나라 상품 등록 등 등록 절차 진행(추후 별도 안내)

4. 향후 일정 및 계획

지정 회차	1분기
추천기관 추천기간*	1.22. ~ 2.23.
벤처나라 온라인신청	2.19. ~ 3.5.
지정 결과 발표	3.16

□ (추천기관의 역할) : '18.01.22. ~ 02.23. (5주)

- ① 추천기관별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협조 등 후보업체 신청 접수
 -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제출서류(추천업체가 조달청에 온라인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추천기관 자체평가기준에 의해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여 접수
- ②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품질평가 실시(평가 불가능한 경우 우리청에 평가요청)
- ③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서' 엑셀파일을 조달청으로 회신

□ (추천받은 업체의 역할) : '18.02.19. ~ 03.05. (2주)

- ① 추천기관을 통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요청
- ② 추천을 받은 업체는 2주 간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 (조달청의 역할) : '18.03.06. ~ 03.16. (2주)

- ① 기술·품질평가 대상 기업·상품에 대해 평가 실시
- ② 평가 면제 및 기술·품질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적합성 심사
- ③ 최종 선정업체·상품 발표 및 교육, 벤처나라 상품 등록 지원

(참고1)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 시 평가기준

(참고2)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 시 평가 면제 대상

(참고3)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리스트(조달청에 제출)

□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제품(NEP)으로 인증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을 받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증한 혁신상품인증제품
8.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새싹기업 유망제품
9.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품질 평가를 거쳐 기술·품질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3.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 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제품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제품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창업 성장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8.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 평가를 거쳐 기술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 청장이 별도의 기술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조)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표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 제품
6.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제품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제품
8.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제품
9.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를 거쳐 품질 또는 성능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참고3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리스트(별도 첨부한 엑셀파일로 작성 요청)

201○년도 ○분기 기관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서

추천 기관명	추천 사유 ¹⁾	추천기업정보							추천상품정보			기술 평가 여부 ⁹⁾	품질 평가 여부 ¹⁰⁾	벤처 기업 ¹¹⁾	창업 기업 ¹²⁾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명 ²⁾	전화 번호 ³⁾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⁴⁾	휴대폰 번호 ⁵⁾	상품명 ⁶⁾	상품분류 ⁷⁾	상품설명 ⁸⁾					

별도 첨부한 엑셀파일로 작성 후 공문 회신 요청드립니다

- 1) 추천사유 - 제8조 내지 제10조 각 호에 따라 기술 또는 품질 평가를 면제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를 명시하고,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술·품질평가를 거쳐 추천하는 경우에는 "기술 우수 제품"으로 명시 (※평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인증서 등), 평가결과 첨부)
- 2) 담당자명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명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자명)
- 3) 전화번호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번호)
- 4) 이메일주소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이메일주소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 이메일주소)
- 5) 휴대폰번호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휴대폰번호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휴대폰번호)
- 6) 상품명 - 제품명 기재 (신기술 적용제품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 제품의 경우 반드시 "기술명"이 아닌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명" 기재)
- 7) 상품분류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군 총 8개 분야* 중 해당 제품 분류
* 디지털/가전,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공구/기계, 전문장비, 건강/의료, 교육용품, 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 아이디어상품
- 8) 상품설명 - 기술 우수성 중심의 상품 설명 자료(100자 이내)
- 9) 기술평가 여부 - 제7조 제4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기술평가를 진행한 경우 O,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술평가 면제 대상은 "면제"
- 10) 품질평가 여부 - 제7조 제4항 또는 제9조에 따라 품질평가를 진행한 경우 O,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품질평가 면제 대상은 "면제", 품질평가 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별도의 품질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X
- 11)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 벤처기업 확인증 증빙자료로 첨부)
- 12) 창업기업-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설립년도 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로 첨부)